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0. 12. 10
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“공인인증서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“생체인증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생체정보(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, 지문 등의 정보)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3조(서비스 종류) ~ 제4조(서비스의 신청,해지 및 추가) (생략)</p> <p>제5조(이용자 확인 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)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</p>	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“인증서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“생체인증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생체정보(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, 지문 등의 정보)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3조(서비스 종류) ~ 제4조(서비스의 신청,해지 및 추가) (생략)</p> <p>제5조(이용자 확인 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)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 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생체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폰뱅킹: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</p> <p>2. 모바일뱅킹: 이용자 ID,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<b>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</p> <p>3. 인터넷뱅킹: 이용자 ID,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<b>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</p> <p>제6조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~ 제7조(출금계좌 및 입금계좌) (생략)</p> <p>제8조(자금이체한도) 이용자는 은행이 &lt;표 1-1&gt; 과 &lt;표 1-2&gt;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 다만 해외거주자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</p>	<p>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생체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폰뱅킹: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</p> <p>2. 모바일뱅킹: 이용자 ID,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<b>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</p> <p>3. 인터넷뱅킹: 이용자 ID, 이용자비밀번호, 계좌(카드)번호, 계좌(카드)비밀번호, 자물쇠카드의 코드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<b>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</p> <p>제6조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~ 제7조(출금계좌 및 입금계좌) (생략)</p> <p>제8조(자금이체한도) 이용자는 은행이 &lt;표 1-1&gt; 과 &lt;표 1-2&gt;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 다만 해외거주자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“은행이 정한 인증서”로 용어 수정</p>

**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**

개정전						개정(안)						비고
< 표 1-1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>						< 표 1-1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>						
(단위: 백만원)						(단위: 백만원)						
구 분			보안등급별 기본한도		영업점장 승인	구 분			보안등급별 기본한도		영업점장 승인	
			1 등급	2 등급					1 등급	2 등급		
인터넷뱅킹 (모바일뱅킹 포함)	개인	1 회	100	<b>10</b>	제한없음	인터넷뱅킹 (모바일뱅킹 포함)	개인	1 회	100	<b>10</b>	제한없음	
		1 일	500	<b>10</b>	제한없음			1 일	500	<b>10</b>	제한없음	
	법인	1 회	1,000	-	제한없음		법인	1 회	1,000	-	제한없음	
		1 일	5,000	-	제한없음			1 일	5,000	-	제한없음	
폰뱅킹	개인	1 회	50	<b>10</b>	제한없음	폰뱅킹	개인	1 회	50	<b>10</b>	제한없음	
		1 일	250	<b>10</b>	제한없음			1 일	250	<b>10</b>	제한없음	
	법인	1 회	100	-	제한없음		법인	1 회	100	-	제한없음	
		1 일	500	-	제한없음			1 일	500	-	제한없음	
<p>* 1 등급 한도 이용 고객과 점자 자물쇠카드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모바일뱅킹은 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한도 관리함.</p>						<p>* 1 등급 한도 이용 고객과 점자 자물쇠카드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모바일뱅킹은 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한도 관리함.</p>						
< 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>						< 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>						
거래이용수단					보안등급	거래이용수단					보안등급	
OTP 발생기 + (공인인증서,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)					1 등 급	OTP 발생기 + ((삭 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)					1 등 급	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"은행이 정한 인증서"로 용어 수정
자물쇠카드 + (공인인증서,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)					2 등 급	자물쇠카드 + ((삭 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)					2 등 급	
* 폰뱅킹은 공인인증서,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및 생체인증 제외함						* 폰뱅킹은 (삭 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및 생체인증 제외함						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제9조(거래지시 처리기준) ~ 제20조(합의관할) (생 략)	제9조(거래지시 처리기준) ~ 제20조(합의관할) (생 략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